

창원지방법원 2022. 10. 25 선고 2021가단28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윤

담당변호사 박세영, 최종원, 나유신

변 론 종 결 2022. 8. 30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소외 D와 피고들 사이에 2021. 3. 1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들은 소외 D에게 창원지방법원 2021. 3. 19. 접수 제14636호로 마친
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(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소13134)를 제기하여 2018. 1. 25. 'D은 A에게 17,718,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1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소외 D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(이하, 이 사건 각 부동산)을 1995. 7. 27.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받았다가 2015. 10. 12. 증여를 원인으로 E에게 이전해주었다.

그런데 D은 모 E가 사망하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2. 11.자 상속을 원인으로 2021. 3. 19.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같은 날인 2021. 3. 19. 곧바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/2에 관하여 2021. 3. 17.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, D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들에게증여하였고,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.

피고들은,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그 금액이나 채권양도통지 사실을 알 수 없어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고,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결과, F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, D은 과거 및 2022. 2. 24. 기준 별지 2. 조회 내역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, 그 시가 등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, D은 2021. 3. 1.부터 2022. 1. 31.까지 사이에 G은행에 대한 1,641,000원 상당의 채무외에는 다른 금융채무가 없었고,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30,351,348원(=17,718,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11. 29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. 8. 30.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)인바, D이 이 사건 처분행위일인 2021. 3. 19.경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달리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판사 문선주

별지